

자립수당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대상자



-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만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동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이 아니어도 보호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예시 A 아동양육시설에서 6개월 동안 지내던 중 B 공동생활가정으로 전원 조치되어 1년 7개월을 지내다 만기 퇴소한 경우 → A아동양육시설(6개월) + B공동생활가정(1년 7개월) = 2년 1개월 인정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도 보호기간 합산 시 포함

- 단, 보호종료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 상 난민인정자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지급금액



- 보호종료아동 1명당 **매월 30만원** 자립수당이 지급됩니다.
- 지급일은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입니다.

신청기간



- 2019년 3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단!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예정 아동 : **시설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가정위탁 보호종료 예정 아동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자립수당 지급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2 우편 또는 팩스 신청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신청서류



1 필수 제출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2 추가 제출서류

-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 대리신청 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아동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 친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시설종사자는 재직 증명 서류, 위탁부모는 가정위탁 확인서 등
- 시스템 상 보호종료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보호종료 확인서' 요청 가능
 - ※ 담당 공무원이 보호종료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보호종료아동은 자신이 보호종료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9년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보호종료아동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통합 사례관리를 지원하여 소득·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대상자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 지역에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자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3,501,813원) 인 자

신청지역



- '19년에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7개 시·도가 참여합니다.

지원내용



① 주거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청년 매입임대주택(원룸형 위주) 240호를 지원합니다.
-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기 사례관리 기간(2년)동안 보증금·월세는 무료이며, 수도·전기세 등 관리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 관리비 미납, 주거 집기 파손 등에 대비해 입주 시 내에 예치금(100만원)을 맡겨야 하며 계약종료 시 미납 관리비, 파손 수리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돌려줍니다.

② 주거환경조성

- 세탁기·냉장고·가스레인지·책상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가전·가구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③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 실현을 위해 전문 사례관리사가 주기적 상담을 통해 취업·학업 등 자립 정보 제공, 진학·직업훈련·생활·의료 등 개별 아동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 자원을 발굴 및 연계해줍니다.
- 전문 사례관리사를 통해 아동 1인당 매월 20만원 상당의 자립 경비를 지원합니다. (연 최대 240만원)
- 사례관리는 월 1회를 원칙으로 하며 방문·내방·유선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기간



• 2019년 4월 1일~4월 30일

- ※ 각 지역 수행기관 상황에 따라 신청기간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홈페이지에 안내 예정

신청방법



- 보호종료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① 필수 제출 서류

-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신청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보호종료 확인서
 -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 ※ 우편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

② 추가 제출 서류

- 아동자립지원단장, 시설장, 가정위탁지원센터장, 아동복지협회장, 그룹홈협의회장, 시·도, 시·군·구청장 등의 추천서(선택사항)
 - ※ 추천서는 선택사항으로,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